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계정 해지(Closing Out Your Account)

서문

소매업체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허가증, 면허 및 계정 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서 계정을 해지하도록 통보해야 함을 인지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 적극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의 소규모 판매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나, 2017년 1월 1일 이후 고객으로부터 지역 기본 요금 (local charge)을 자발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상품 재고를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사업체의 소유권 유형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예: 자영업 -> 기업 또는 동업)
- 사업체에 동업자가 추가되거나 빠진 상황에서 동업 계약에 따라 동업 관계의 변경 발생 시 해당 동업을 해지하고 새로운 동업을 결성해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CDTFA에 통보하지 않으면 귀하가 사업 소유 또는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승계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수료, 추가 요금, 이자 및/또는 과징금에 대해 사업의 전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계정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 주제를 설명합니다.

- CDTFA에 통보하기.
- 최종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 신고서 제출.
- 계정 해지 후 판매.
- 승계인의 책임 및 납세 확인.
- 소유권 변경.

본 간행물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www.cdtfa.ca.gov에 방문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 711)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이나 다른 간행물 개선을 위한 제안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주소로 직접 의견 또는 제안을 보내주시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참고: 본 간행물은 표지에 명시된 간행물 작성 시점에 유효한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과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결정은 법률에 근거하며 본 간행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CDTFA에 통보하기

사업체 매각, 동업자 변경, 폐업 시에는 CDTFA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정을 해지하기 전 다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게 된 날짜.
-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게 된 사유.
- 동업 관계를 해지하거나 동업자로 추가된 모든 동업자의 이름 및 삭제/추가 날짜.
- 재판매 재고, 가구, 설비 및 장비를 폐기하는 데 사용한 방법. 해당 품목을 판매한 경우, 판매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체 전체, 사업체 일부 또는 재판매 재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판매한 경우 판매 가격, 구매자 이름, 구매 가격이 명시된 판매 영수증 또는 구매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유 재고의 구매 가격.
- 현재 주소, 영업 중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의 주소.
- 사업체 웹사이트 주소(있는 경우).

CDTFA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온라인 서비스 포털을 사용하여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 액세스 코드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CDTFA 온라인 계정이 없는 경우 동봉된 [CDTFA-65, Notice of Closeout](#)(해지 통보) 양식을 사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직원이 해당 양식을 검토한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추가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 직원이 귀하의 계정을 해지합니다.

또한 최종 세금 신고서와 아직 미제출된 이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정 해지를 신속히 처리하려면 세금 신고서를 온라인 서비스 포털에서 제출하고 세금, 수수료, 추가 요금, 과징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 결제 수단(certified funds)을 사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수표로 납부하고 취소된 수표의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정 해지를 완료하는 데 8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 EFT를 통해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EFT 프로세스로 최종 납부액을 지불하십시오.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의 전액(감사로 인한 체납액 포함)을 납부하면 직원이 예치된 모든 보증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계정을 해지한 후에도 4년간 사업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최종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 신고서 제출

계정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날짜까지 매출을 보고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사업 매각의 일부로 발생한 가구, 설비 또는 장비의 판매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매하여 개인적 사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정 해지를 신속히 처리하려면 최종 세금 시 설비 및 장비의 판매 및 보유 재고를 별도로 보고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재판매를 위해 다른 소매업체 또는 사업체 매수인에게 재고를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서에 해당 품목은 *재판매 목적으로 다른 소매업체에 판매(Sales to Other Retailers for the Purpose of Resale)*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재판매 증명서를 취득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정기 신고 날짜에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정을 해지하는 분기의 마감일까지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정을 해지하고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미납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신고 여부와 무관). 적극적으로 사업에 종사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법인, 파트너십, 합자회사(LP), 유한회사(LLP) 또는 유한책임회사(LLC)이며 매각 자산 가격의 일부로 세금을 추가, 포함한 경우 또는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인 임원이나 기타 개인은 [세입 및 조세법\(R&TC\) 6829절](#) 및 [규정 1702.5](#)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Responsible Person Liability)*에 따라 미납 세금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귀하의 계정을 처리하는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계정 해지 후 발생한 과세 판매

계정 해지를 요청하기 전, 과세 판매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개인 유형자산**(보유 재고, 설비 또는 장비 포함)을 3회 이상 판매한 경우 CDTFA에 등록하여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엔 계정 해지 이후의 설비 및 장비의 단일 판매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 해지 후 60일 이내에 소매 판매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판매가 계정 해지일에 일반적으로 예상된 판매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계정 해지로부터 60일이 지났으나 해지 후 1년 이내에 판매가 발생하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 계정 해지일 당시 판매 계약이 있던 경우
- 계정 해지일 당시 구매 옵션이 있는 대여가 존재했던 경우
- 적시에 설비 및 장비를 판매할 계획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재판매 재고와 같이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자산의 원가에 대한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자산 판매 - 설비, 장비 및 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 자산을 포함한 개인 유형자산의 소매 판매는 법령에 따른 면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세입 및 조세법(R&TC) 6367절** 및 **규정 1595 비정기 판매—사업체 매각—사업 개편** (Occasional Sales—Sale of a Business—Business Reorganization)에 따라 비정기 판매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비정기 판매의 면세 규정에 따라,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사업 활동의 과정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사업 자산을 판매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산의 판매가 수량, 범위, 성격 면에서 판매자 허가증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 일련의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2회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등록하고 관련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595를 참조하십시오.

예시: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 기반 사업체(예: 세탁소)를 운영하며 12개월 이내에 세탁기, 다리미 등 사업 자산을 상당한 금액으로 2회(2020년 2월 23일, 2020년 8월 16일)에 걸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2건은 비정기 판매로 간주되어 면세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8일, 2021년 2월 8일에 다른 사업 자산을 상당한 금액으로 2회 더 판매할 경우 해당 판매는 앞서 발생한 2회의 판매와 동일한 12개월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각각 3회, 4회차 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정기 판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처음 2회의 판매와 동일한 12개월 기간 내에 발생한 3회차 및 그 이후의 판매의 경우 달리 면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하며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과세 대상일 수 있는 개인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할 경우, CDTFA에 등록하여 판매자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규정 1699 허가증(Permits)** 참조).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모두 등록하여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한 사업체에서 설비 및 장비를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설비 및 장비의 판매에는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재판매를 위한 재고의 판매

재판매를 목적으로 재고를 구매한 제3자에게 재고 등의 자산을 판매하고 적시에 유효한 재판매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해당 거래는 재판매를 위한 판매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규정 1668 재판매를 위한 판매**).

개인 유형자산을 부수적으로만 판매하는 서비스 사업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부수적 상품 판매를 위한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사업 자산을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된 사업 자산 중 해당 사업에서 소매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사용된 자산에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즉, 판매자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에만 세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발소의 주요 활동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서비스(헤어 커트) 수행입니다. 이발소와 같은 사업체가 이발소에서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부수적 판매 활동(예: 헤어 관리 제품 판매)을 수행한 경우,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한 활동(헤어 제품 판매)을 위해 보유하고 사용된 사업 자산의 판매만이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진열장, 선반, 컴퓨터, 금전 등록기 및 기타 유사한 자산과 같은 헤어 관리 제품의 소매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사용되는 자산을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트리머 및 드라이어와 같은 헤어 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사용되는 사업 자산을 판매한 경우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위에서 명시된 판매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일련의 판매가 아닌 한 사업 자산의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설비 및 장비(F&E)의 가치 결정

판매자가 과세 대상 설비 및 장비(F&E)를 판매할 때 구매자와 일정한 가격을 합의한 경우,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신고할 과세 대상 금액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일괄 매각(bulk sale) 시 당사자끼리 과세 대상 F&E 판매에 대한 일정 가격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현행 가치로 F&E를 매매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F&E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장부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부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목적으로 결정된 감정가 또는 독립 감정을 통해 결정된 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의 책임 및 납세 확인

사업을 매수하는 경우 승계인의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체 또는 상품 재고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규정 1702 승계인의 책임(Successor's Liability)**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업체 또는 상품 재고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미납 세금, 이자 및 과징금(있는 경우)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구매 가격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충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에 대해, 최대 사업 또는 상품 재고의 매수 가격까지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또는 과징금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한 CDTFA의 납세 확인서를 취득할 경우 해당 금액을 구매 가격으로 포함하여 원천징수 할 매수인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매수인은 납세 확인서를 즉시 요청하여 납세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에스스로 회사를 통해 사업을 매수할 경우 회사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납세 확인서를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세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온라인 서비스 포털(www.cdtfa.ca.gov)로 이동하여 *Login/Register*(로그인/가입) 탭을 선택한 후 *Request a Sales Tax Clearance*(판매세 납세 확인서 요청)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귀하의 지역 CDTFA 사무소에 서면으로 납세 확인서 발급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납세 확인서 발급 요청 시 포함해야 할 정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매도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사업체 주소. 사업체의 지점이 2곳 이상이며 매수인이 1곳 이상의 지점을 인수하되 전 지점을 인수하지는 않을 경우 납세 확인서를 요청하는 각 지점을 열거해야 합니다. 인수할 사업체의 지점이 2곳 이상이며, 모든 지점을 인수하는 경우 요청 시 해당 사항을 명시해 주십시오.
- 인수 금액이 기재된 매매 증권 또는 인수 계약서 사본.
- 에스스로 회사 이름 및 에스스로 번호(해당되는 경우).
- 사업 인수일.

또한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 사업체 매각을 완료하기 위해 납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감사가 필요하며 매도인의 장부 및 기록을 즉시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승인을 받는 데 6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승계인의 책임은 미납 세금, 이자 또는 과징금에 대한 매도인의 기본적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CDTFA는 사업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승계인에 대한 징수를 시도합니다.
- 매도인이 사업을 매각하여 수령하는 실제 금액은 매도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CDTFA는 매수 금액에서 납부할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원천징수 해야 할 금액을 에스스로 회사에 고지합니다. 납세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가구, 설비 및 장비 판매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는 해당 금액을 CDTFA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

사업 소유권을 변경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변경한 경우, CDTFA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을 CDTFA에 통보하지 않으면 새 소유권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지만 소유권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 계정을 취득해야 합니다. 계정은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사업체(자영업, 동업,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작 투자 등)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소유권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새 계정이 필요합니다.

- 동업 관계에서 동업자가 추가 또는 삭제되었으며 동업 계약에 따라 새로운 동업을 결성해야 할 경우.
- 부부 공동소유 사업체 운영 중 혼인 상태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거 관계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 사업체의 조직 유형이 상기 명시된 조직과 같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 기업 개편 또는 합병으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경우.

일부 소유권 변경에는 개인 유형자산의 과세 대상 양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CDTFA에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CDTFA는 계획된 변경을 검토하고 개인 유형자산의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 새 계정이 필요한지 등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나열된 리소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CRS: 711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근무합니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무소

도시	전화번호
Bakersfield	1-661-395-2880
Cerritos	1-562-356-1102
Culver City	1-310-342-1000
El Centro	1-760-352-3431
Fairfield	1-707-862-3501
Fresno	1-559-440-5330
Glendale	1-818-543-4900
Irvine	1-949-440-3473
Oakland	1-510-622-4100
Rancho Mirage	1-760-770-4828
Redding	1-530-224-4729
Riverside	1-951-680-6400
Sacramento	1-916-227-6700
Salinas	1-831-754-4500
San Diego	1-858-385-4700
San Francisco	1-415-356-6600
San Jose	1-408-277-1231
Santa Clarita	1-661-222-6000
Santa Rosa	1-707-890-6267
Ventura	1-805-856-3901
West Covina	1-626-671-3702

타주 사무소

Chicago, IL	1-312-201-5300
Houston, TX	1-713-739-3900
New York, NY	1-212-697-4680
Sacramento, CA	1-916-227-6600

차량 운송 사무소

West Sacramento, CA	1-800-400-7115
---------------------	----------------

인터넷 www.cdtfa.ca.gov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률이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예: 법률, 규정, 양식, 간행물, 산업 가이드 및 정책 안내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허가증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Verify a Permit, License, or Account\(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확인\)](#) 참조).

간행물의 다국어 버전은 웹사이트(www.cdtfa.ca.gov)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용한 다른 리소스는 캘리포니아주 세무 서비스 센터(www.taxes.ca.gov)입니다.

세금 정보 보고서

분기별로 제공되는 *세금 정보 보고서*(TIB: Tax Information Bulletin)에는 특정 유형의 거래 시 법률 적용에 관한 글, 새롭게 개정된 간행물 소식 및 기타 관련 글이 실려 있습니다. 웹사이트(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에서 *최신 TI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TFA 업데이트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하면 TIB 시간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및 세미나

CDTFA는 납세 신고와 관련한 튜토리얼 등 판매세 및 사용세 기본 사항에 관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의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특정 강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지역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서면 세금 자문

보안을 위해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DTFA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서면 자문을 제공하였고, 귀하가 해당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부과된 세금, 과징금 또는 이자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문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문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이 모두 설명되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세·수수료 정보에 대한 서면 자문을 구하려면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email)에 방문하여 자문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 요청을 서신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목재 제품 평가세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MTS) 추가세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의 일반 정보를 알아보려면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기타 모든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조언을 구하려면 다음 주소로 자문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Program Administration Branch, MIC:3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납세자 권리 보호

납세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일반적 경로(예: 관리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간행물 70,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의 이해(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를 참조하거나 1-916-324-2798 또는 1-888-324-2798로 연락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1-916-323-3319입니다.

원하실 경우 다음 주소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규정, 양식, 간행물 및 산업 가이드

간행물별로 목록이 다릅니다.

귀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규정](#), [양식](#), [간행물](#) 및 [산업 가이드](#)의 발췌 목록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출판물의 스페인어 버전도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규정

- 1595 비정기 판매—사업체 매각—사업 개편(*Occasional Sales—Sale of a Business—Business Reorganization*)
- 1596 건물 및 부동산에 부착된 기타 자산(*Buildings and Other Property Affixed to Realty*)
- 1699 년허가증(*Permits*)
- 1702 승계인의 책임(*Successor's Liability*)

폐업 통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지침: 귀하의 계좌를 중단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에스스로 펀드 정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판매자 허가증이 있는 경우, 본 양식 작성 전에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 간행물 제74호 계좌 중단을 참조하십시오. 간행물 74에는 허가증 중단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CRS: 711)로 연락하십시오.

섹션 I: 계좌 정보

이름		계좌 번호
현재 주소(도로명 주소)		주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
시	주	우편 번호

섹션 II: 폐업 정보(지침은 뒷면 참조)

- 폐업 날짜 _____
- 판매자 허가증을 사용하여 귀하가 사용할 물품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네라고 답변한 경우, 해당 구매에 대해 다음 중 누구에게 세금을 납부했습니까? a. 공급 업체 b. CDTFA
- 남은 재고, 재판매용 구매 또는 다른 주 내 공급 업체로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아래에 표시하십시오.
 a. 판매되었으며 최종 세금 보고서에 보고됨 b. 보관 중 c. 감사에 포함 d. 기부 _____
 e. 재판매용으로 판매(구매자 계좌 번호: _____) f. 기타 _____
- 선불 휴대 전화 서비스(MTS) 계정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a. 선불 전화 카드 및/또는 서비스 판매를 중단한 날짜 _____
b. 소규모 판매자에 해당할 경우 계좌를 폐쇄하려는 날짜 _____
- 우편물 배달을 원하는 주소 및 전화번호 _____
- 장부 및 기록 보관 장소 _____
- 사업체가 매각되었습니까? 네 아니요
a. 사업체가 매각된 날짜 _____
b. 총 판매 가격(달러) _____
c. 구매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_____
d. 비품 및 장비(F&E)를 매각했습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변한 경우, h로 이동하십시오.
e. F&E 매각 가격(달러) _____
f. F&E 판매는 매각된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까? 네 아니요
g. 그렇지 않은 경우, 매각이 발생한 사업장 주소를 제공하십시오. _____

참고: 비품 및 장비를 매각한 경우, 사업체를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한 비품 및 장비의 판매 가격을 최종 세금 보고서 내 '이용세 납부 대상 구매'란에 보고해야 합니다.
h. 에스스로 번호 _____
i. 에스스로 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_____

섹션 III: 서명

서명	정자체로 쓴 이름과 직함	날짜
----	---------------	----

해지 통보

섹션 IV: 해지 시 요구되는 항목의 목록

다음 항목은 계정 해지 완료, 결제된 보증금 반환 또는 에스스로 결제 발행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미납 잔액 결제.
- 최종 세금 신고서 및 결제금(신고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800-400-7115[CRS:711]로 전화). 납부해야 할 금액은 신속한 거래 완료를 위해 공인 결제 수단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 송금 (EFT)로 결제해야 할 경우에도 EFT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판매된 재고, 설비 및 장비의 가격이 표시된 에스스로 지침 또는 판매 영수증 사본.

이 양식을 작성한 후 증빙 서류와 함께 다음 주소로 발송해 주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ustomer Service Center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90

섹션 V: 지침

아래 열거된 항목이 계정 해지와 관련이 없으며, 섹션 I 및 II를 모두 작성하여 섹션 III에 서명을 완료한 경우 이 양식을 해당 CDTFA 사무소로 발송하십시오. CDTFA 사무소 목록은 간행물 74를 참조하십시오.

소규모 판매자- ‘소규모 판매자(small seller)’는 선불 MTS를 판매하며 전년도 연 매출이 선불 MTS 연 매출 기준에 미달하는 판매자(통신 서비스 공급업체 제외)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 소규모 판매자는 고객에게 선불 MTS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자가 운영하는 지점이 2곳 이상인 경우, 모든 지점의 선불 무선 서비스 및 제품의 매출을 사용하여 연 매출을 판단해야 합니다. 소규모 판매자는 연 매출액이 연 매출 기준에 미달함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부 및 기록의 보관 위치- 장부 및 기록의 보관 위치는 감사 목적상 중요합니다. 감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과소 납부 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과다 납부하지 않도록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에스스로 지침 또는 판매 영수증 사본- 판매된 재고, 설비 및 장비의 가격이 표시된 문서. 계정 해지일에 설비 및 장비의 판매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단일 판매는 비정기 판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 해지일 이후에 발생한 설비 및 장비의 단일 판매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1. 판매가 계정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했으며, 해당 판매가 계정 해지 시점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2. 판매가 계정 해지일로부터 60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했으며,
 - a. 계정 해지일에 판매 계약이 존재한 경우
 - b. 구매 옵션이 있는 대여가 존재한 경우
 - c. 적시에 설비 및 장비를 판매하는 합의가 있던 경우.

이 항목의 문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CDTFA는 30일이 지난 후 결제된 보증금을 환불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항목의 문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CDTFA 사무소에 자세한 지침을 문의하십시오.

CDTFA 전용			
등록 정보가 최신 정보입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F&E?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최종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재고?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최종 신고서가 납세자에게 제공되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첨부된 서류가 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체납 내역이 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미충당 결제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소셜 미디어 팔로우



간행물 74-K | 2021년 8월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우편 주소: P.O. BOX 942879 • SACRAMENTO, CA 94279-0001